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238

발의연월일: 2024. 7. 25.

발 의 자:이양수·조경태·박준태

김선교 • 박덕흠 • 강선영

이철규 • 이헌승 • 배준영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하면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함)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은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더라도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어선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많은 때에는 출·입항 신고를 위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현재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대부분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있어 비대면 자동신고가 가능한 실정이므로, 대면 신고 제도를 비대면 자동 신고

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이 출·입항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중에서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에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을 "조업자제해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입항 신고) ① (생 략)	제8조(출입항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	2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	
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어	
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	
는 어선은 제1항에 따른 출입	
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	3. <u>조업자제해역</u>
에 출어하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